

## CCTV 운영·관리방침

제정 : 2012.03.23

최근개정 : 2014.05.08

### 제 1 조 (목적)

본 CCTV 운영·관리방침(이하 "방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0 조에 따라 신한아이타스(이하 "회사"라 함)가 준수하여야 하는 CCTV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회사는 CCTV 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목적에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 제 3 조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회사는 CCTV 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다.

1. 설치 대수 : 총 16 대
2. 설치 위치 : 회사 출입구 및 주요 시설
3. 촬영 범위 : 회사 내 동선 및 출입문

### 제 4 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회사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 ①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인영상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개인영상정보관리자
소속	준법지원 윤진국 실장	준법지원실김준용
전화번호	02-2180-0412	02-2180-0409
이메일	jkyun@shinhan.com	Jykim72@shinhan.com

- ② 회사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1. 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2. 회사에는 다수의 CCTV 가 설치되어 있어 회사 전체가 영상정보기기 설치 지역임을 명

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 부착한다.

	<h1>CCTV 설치안내문</h1> <p>(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p>
설치목적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관리
촬영범위	사무실 및 로비 입구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 녹화
보관기간	촬영 일부터 00일
보관장소	본사 전산실 내
책임자	경영지원실장
담당자	경영지원실 ○○○ 2180-0000

**신한아이타스(주) 경영지원실**

**제 5 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CCTV 의 촬영시간, 보존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1. 24 시간(정전및기타정비를위한시간제외)
- ②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1. 최소 30 일이상녹화장치의저장용량범위내에서보관하며, 최대 180 일(6 개월) 이내로함.
  2. 단, 회사의운영및사건, 사고등의처리를위하여보존이필요한경우에는해당부분만별도관리할수있음.
- ③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1. CCTV 모니터링및녹화기설치장소인전산실
- ④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1. 영상정보의보관은녹화장치(DVR) 하드디스크에보관
  2. 저장된화상정보는녹화장치(DVR) 저장용량에따라자동삭제
  3. 개인영상정보가기록된출력물(사진등) 등은파쇄또는소각

**제 6 조 (CCTV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회사는 CCTV 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

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개인영상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개인영상정보보호관리자 개인영상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은자
------------	--

**제 7 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개인영상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②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회사에 요구(청구)할 수 있다
- ③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 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⑤ 정보주체는 회사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조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재생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설치목적 범위를 넘은 카메라의 임의 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 9 조 (영상정보의 관리)**

①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항목 (날짜 및 시간)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제 10 조 (보관 및 파기)**

① 회사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CCTV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운영 및 사건, 사고 등의 처리를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파기하지 않고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저장된 영상정보는 녹화장치(DVR)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 삭제
2.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제 11 조 (CCTV 운영·관리 방침의 고지에 관한 사항)**

회사의 CCTV 운영·관리 방침은 회사 내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 **부칙 (2012.03.26)**

(시행일) 이 방침은 2012.03.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08)**

(시행일) 이 방침은 2014.05.08 부터 시행한다.